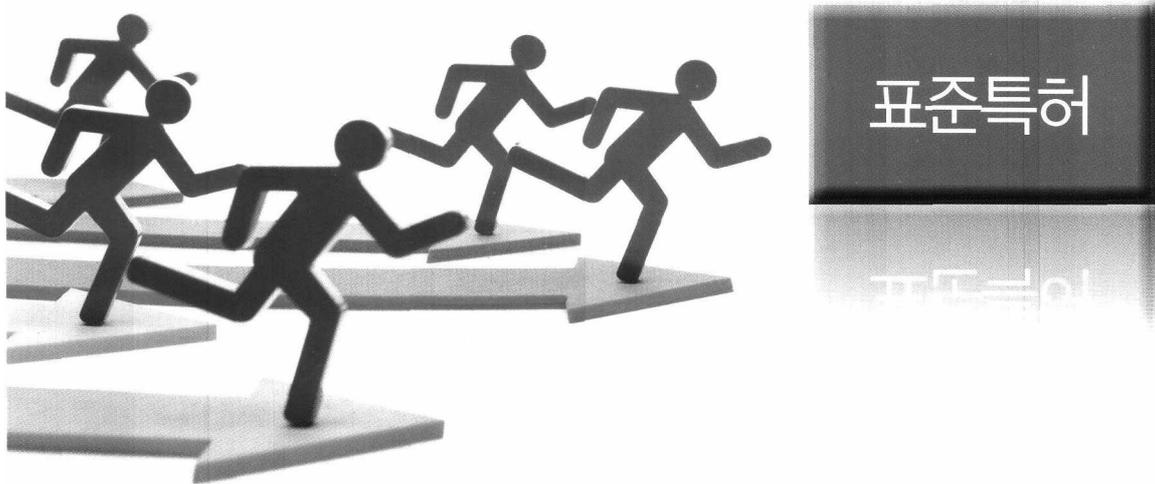


표준특허 확보 전략과 지식재산권 정책

표준특허 우선 확보가 지적재산권 가치 높여

표준특허는 표준 규격을 따르는 장치 또는 관련기술을 구현할 경우 반드시 해당 특허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특허다. 표준특허는 최근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소리없는 전쟁'이라고 불리는 표준특허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최 근 삼성과 애플은 국내와 네덜란드를 비롯해 4개 대륙 9개 국가에서 20여 건의 특허 및 표준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이 전개됐다면, 올해에는 본안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판매금지 소송은 다른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내세워 특허를 회피함으로써 '사실상 효력'이 무력해질 수 있다. 그렇지만 본안 소송은 거액의 특허 사용료를 확정하므로 승패에 따라 한 쪽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 네덜란드와 국내에서 벌어진 공방은 삼성이 보유한 표준특허와 연관된다. 이 공방의 경우 관련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표준특허'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와 네트워크 기지국 간의 데이터 접속 및 속도 관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삼성은 애플에 판매금지 주장에 이어 라이선스 비용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애플

은 삼성 특허의 중요성을 깎아 내리며 그 신규성과 진보성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2월 20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소리 없는 전쟁>이라는 주제로 '표준특허 분쟁에 대한 이해를 돕고 표준특허 창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삼성과 애플의 표준특허 소송 사례를 설명하고 글로벌 표준특허 경쟁에 따른 IT분야의 새로운 R&D 방향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기술표준원은 주요국의 표준특허 동향과 우리의 전략을 소개하고 표준특허 정책과 지원 방안을 발제했다. 기술표준원은 향후, IT 기업 및 신기술 제품 생산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태고자 글로벌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제, 표준특허 분쟁은 '소리 없는 전쟁'으로 표현될 만큼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과 표준의 관계 및 국제 표준의 역사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과 노하우 부족으로 표준화 및 표준특허에 취약한 중소기업체들은 표준특허 대응책이 전무한 상태다. 따라서 FTA 체결 후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전망이 밝지 않다.



▲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으로 표준특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표준과 특허의 '충돌' 그리고 서브머린 효과

표준화는 기술 공개를 통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을 확산하는 것이다. 반면, 지식재산권 제도는 지식재산권자에게 기술의 독점적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신기술 개발을 유도한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특허 제도는 국가가 새로운 기술 개발자에게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부여한다. 그렇지만 표준은 사회 전체의 공동이익 추구를 목표로 누구에게나 공개된다. 이는 특허와 표준의 상호 충돌을 유발하고 있다. 실제로 '사실상 표준'에 특허권이 설정된 경우 특허와 표준의 충돌 현상은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을 '서브머린(Submarine) 효과'라고 한다. 서브머린 효과란 잠수함이 갑자기 나타나 적의 함정을 공격하듯 특허가 시장이 형성될 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다가 갑자기 나타나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를 말한다.

1980년대에 이미 폭넓게 사용되어 '사실상 표준'이 된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이 대표적 예다. 폴리프로필렌은 미국 필립스 페트롤리움(Philips Petroleum)사가 1950년대 말에 특허 출원하여 1980년 초에 특허 등록을 받은 제품이다. 당시에는 특허 출원과 특허 등록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관련 생산업자들은 페트롤리움 사에게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우 표준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는 차단된다. 또 경우에 따라 특허권자가 특허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는 불순한 의도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사실상 표준'에 나타나는 지식재산권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 표준화' 제도가 활용될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이다. 그러나 사적 독점권인 특허권이 공적 표준으로 채택되거나 표준의 제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그 표준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획득한 경우에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자가 표준기술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특정 사용자의 사용 허락을 거부한다면,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과 표준의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표준특허를 둘러싼 분쟁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 표준특허는 소리없는 전쟁으로 표현될만큼 기업간 국가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표준과 특허의 충돌 갈수록 심화

표준특허 영역에서 표준과 특허는 중첩되면서도 충돌하는 관계를 노정(露呈)한다. 표준특허(Essential Patent for Standards)는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표준 규격을 따르는 장치나 방법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필수특허를 말한다. 구체적 문서와 관련해서는 ITU, ISO, ETSI 등 표준화 기구에서 표준 문서의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실시

되거나 이용해야 하는 특허로 정의되어 있다. 이때 표준은 특허 제도와 공존할 수 있지만 특허의 사용 허가 혹은 공유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또 그에 따른 기본적인 충돌 관계를 배제하지 않는 선에서 공존이 가능하다. 표준특허가 심각한 분쟁으로까지 발전하는 이유다. 그 영역은 산업부문간 융합 현상에 따라 비단 IT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있다. 실례로, 각종 부품과 표준이 대량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부문도 표준특허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영역이다. 특히 내비게이션에 장착되는 각종 기능과 관련한 표준특허는 문제 소지가 매우 다분하다.

일반 특허의 경우에는 회피 설계를 통해 침해 문제를 피해가기도 하고 보유 특허로 역공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표준특허는 공개성을 띤 표준으로 회피 설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상대방이 제조를 하지 않으므로 역공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이철희 변리사(베리타스 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표준특허로 클레임을 제기 받으면 단기적으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변리사로서도 표준특허 분쟁의 경험이 없는 기업의 경우 ‘표준특허는 원래 그렇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게 자문의 대부분이다. 법무나 특허 담당자도 이러한 상황을 경영진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주요 임무”라고 말했다.

표준특허 우선 확보가 경쟁력

표준특허에서 본 것처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 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되었을 때 그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된다. 반면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그에 준하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유 시장에서 그 손해는 다시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 더욱이 이것이 부당한 규모로 진행되면 그 손해도 대규모로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호환성 표준의 확보가 곤란해진다. 따라서 어떤 제품이나 호환 제품의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그 제품 및 보완 제품의 수요와 그 제품에 따른 이익이 증가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외부효과의 확보가 어렵게 된다. 더 나아가 이것은 기술 발전과 제품 생산 및 개발에 따른 효과의 제한으로 이어져 국가와 산업 영역에서 중요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결국, 경쟁 기업이나 경쟁 국가의 표준특허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표준특허를 먼저 취득하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

통상적으로 표준특허 확보 전략이 결실을 보기 시작할 때까지 최소 10년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능하면 빨리 표준특허 확보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최초로 MPEG-2 표준화 과정에 참여해 현재 9

건의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콜롬비아대학은 이미 1990년에 특허 관련 표준화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약 220여건의 표준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소니(SONY)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표준화 및 표준특허 활동을 수행한 사례다. IBM, 모토로라, 퀄컴 등도 표준특허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IBM은 2006년 미국 특허 출원(3,600여개) 1위에 올라 로열티 수입만 10억 달러에 이르렀다. 삼성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 표준특허의 우선 선점은 글로벌 시장의 패권으로 이어진다

대기업들도 이러한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점차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체들과 미 성장 산업의 경우 그 구조적 취약성으로 표준특허에 대한 대처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난관은 FTA를 맞아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국내 표준화 기구는 표준특허 취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그 분쟁에 따른 경제적 손해와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제 표준화 기구가 표준특허의 부정적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공정한 규칙과 절차를 제정하고 실시하도록 협력하는 한편 압력행사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국제 표준화 기구의 역할과 파워 확대

지식재산권의 과대 보호는 네트워크 외부 효과를 제한하여 산업 발전과 고객 편의성을 저해하고 서비스 질의 저하와 지속적 혁신을 제약한다. 다른 한편으로 표준은 특허권의 효과적 행사를 위한 전략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기술적 우월성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가격이나 기술 접근성 혹은 활용도가 우수한 개발이나 발명이 표준화에 성공하면 관련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 된다는 의미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허와 표준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기도 하다. 지식재산권 보호의 적정성, 즉 창의적 인센티브, 표준화, 공정 경쟁 사이의 균형과 표준화 기구의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정책이 중요한 이유다. 특히 표준화 기구는 지식재산권 설정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여 표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제 표준화 기구들은 지식재산권자가 해당 표준에 관련된 권리를 전 세계적으로 회원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조건 하에 허여하거나 동등한 조건 하에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자가 허여나 제공을 거절할 경우에는 해당 표준화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국제 표준화 기구는 대체로 지식재산권에 대해 기본 원칙만을 제시하고,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련 이해 당사자들 간에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관련 특허 여부의 조사가 특허 내용의 광범위성과 표준화 기구의 법적 구속력 미비로 인해 쉽지 않아서이다. 국제 표준화 기구와 각국 표준화 기구의 긴밀한 협력과, 지식재산권과의 관계에서도 표준의 법적 구속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IS]